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71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의 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월드건설산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0.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같은 제2목록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8.12.1. 접수 제78836호로 마친,같은 제2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12.1. 접수 제118872호로 마친,같은 제2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9.12.4. 접수 제902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0. 3.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가 같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279,1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 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인수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279,166원에 대한 매월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7. 29. 피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2.1. 미납한 잔금의 담보를 위해 피고에게 같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0.3.17. 피고와 사이에 위
미납 잔금의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같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소유권 이전받을
때까지의 제세공과금을 피 고가 부담)해 주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의 이행을 구 함.

[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세공과금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 금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고 가집행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황윤구 판사 정원석 판사 안지연

제1목록

(목록삭제)

제2목록

(목록삭제)